

교원 신규채용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한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절차) 신입교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매 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인원은 학년도 시작 6개월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2. 신입교원의 채용공고는 채용원서의 접수마감일 15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단, 비전임교원의 채용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20. 7. 16.>
3. 교원신규채용 심사절차는 서류심사,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적성심사, 면접심사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제3조(제출서류) 신규채용에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호부터 7호의 서류는 응모자 모두 제출하고, 8호부터 10호의 서류는 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7. 6. 13.>

1. 교원채용지원서 1부
2. 연구실적목록 1부
3. 논문개요 1부
4. 최근 3년 이내의 대표연구실적물 2편 및 최종학위논문 1편 각 1부 <개정 2017. 6. 13.>
※ 연구실적물은 반드시 게재된 학술지의 표지, 목차, 서지사항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6. 13.>
5. 위 4호의 복사본 각 2부(전공을 제외한 저자명, 학교명(로고), 지도교수명, 발행기관, 발행처 등 모든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복사본) <개정 2017. 6. 13.>
6. 졸업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개정 2017. 6. 13.>
7. 세례교인증명서(당회장 발행: 교회주소 및 전화번호 명기) 또는 목사증명서(현재 소속되어 있는 총회 발행) 1부 <개정 2017. 6. 13.>
8. 4호를 제외한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물 각 1부 <개정 2017. 6. 13.>
9. 외국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박사학위기 사본 1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신설 2017. 6. 13.>
10. 경력 및 재직증명서(교원 채용지원서에 기재된 전체 경력) 각 1부 <신설 2017. 6. 13.>
※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 날인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

제4조(서류심사) ①서류심사는 제3조의 제출서류에 의하되,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3조 제①항에서 제④항 및 정관시행세칙 제14조 제③항에 따른 적격여부를 교무혁신처가 주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04. 27.>

②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포함)학술지와 A&HCI, SSCI, SCI(SCIE 포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SCOPUS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Scopus Document Type 4종(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인정), Book Chapter(조건부인정))에 등재된 국제학술지(A급논문)으로 한다. 단, 문예창작학과 등 창작분야는 교수업적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별표 1<연구업적>을 준용하여 A급 문예지 게재작 및 ISBN이 부여된 출판물 기준 100페이지 이상의 저서를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3.><개정 2020. 12. 8.>

③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양적점수가 20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 처리한다. <신설 2016. 12. 13.><개정 2020. 3. 17.>

④연구실적물 양적점수는 단독일 때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포함)학술지 게재논문은 100점, A&HCI, SSCI, SCI(SCIE 포함) 게재논문과 SCOPUS 중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Scopus Document Type 4종(Article, Review, Erratum(조건부인정), Book Chapter(조건부인정))에 등재된 국제학술지(A급논문)는 200점으로 한다. <신설 2016. 12. 13.><개정 2020. 12. 08.>

⑤공동연구의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 12. 13.>

1. 양적점수

– 주저자(책임저자 또는 교신저자) : $2/(N+1)$ 이며, 공동참여자 : $1/(N+1)$ 로 한다.

2. 질적점수

1) 교육 및 연구중심(연봉제) 전임교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	17.0	15.0	13.0	12.0
19	16.3	14.5	12.7	11.8
18	15.6	14.0	12.4	11.6
17	14.9	13.5	12.1	11.4
16	14.2	13.0	11.8	11.2
15	13.5	12.5	11.5	11.0
14	12.8	12.0	11.2	10.8
13	12.1	11.5	10.9	10.6
12	11.4	11.0	10.6	10.4
11	10.7	10.5	10.3	10.2
10	10	10	10	10
공식	$10 + (\text{원점수} - 10) \times 0.7$	$10 + (\text{원점수} - 10) \times 0.5$	$10 + (\text{원점수} - 10) \times 0.3$	$10 + (\text{원점수} - 10) \times 0.2$

2) 교육중심(강의중점계약제 등) 전임교원 <개정 2021. 04. 27.>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5	12.0	10.0	8.0	7.0
14	11.3	9.5	7.7	6.8
13	10.6	9.0	7.4	6.6
12	9.9	8.5	7.1	6.4
11	9.2	8.0	6.8	6.2
10	8.5	7.5	6.5	6.0

9	7.8	7.0	6.2	5.8
8	7.1	6.5	5.9	5.6
7	6.4	6.0	5.6	5.4
6	5.7	5.5	5.3	5.2
5	5	5	5	5
공식	$5 + (\text{원점수} - 5) \times 0.7$	$5 + (\text{원점수} - 5) \times 0.5$	$5 + (\text{원점수} - 5) \times 0.3$	$5 + (\text{원점수} - 5) \times 0.2$

제5조(기초심사) <삭제 2014. 12. 5.>

제6조(기초 및 전공심사)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3조 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외부심사와 내부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평가 대상 및 내용 : 최종학위 논문과 대표 실적물 2편을 심사대상으로 세부전공 적합성 및 연구실적물의 질을 평가하도록 한다.

②평가절차: 내·외부 심사위원은 각각 세부전공적합성, 대표실적물 1, 대표실적물 2에 대하여 제11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이를 밀봉하여 교무혁신처에 제출한다. 교무혁신처는 각 심사 대상자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후, 순위에 따라 채용 인원의 5배수(평가 대상자가 5배수 이내일 때는 대상자 전원)를 선발한다. <개정 2008. 11. 8., 2014. 1. 9., 2014. 12. 5., 2021. 04. 27.>

③교무혁신처는 위 제②항에 따른 평가결과 선발된 인원의 명단을 해당 대학장을 경유(소속 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교무혁신처장) 학과(부)장에게 송부한다. 단, 선발자들의 평가점수는 해당 단과대학이나 학과(부)에서 실시되는 적성심사가 끝난 후 송부한다. <개정 2008. 11. 8., 2021. 04. 27.>

제7조(적성심사) ①적성심사는 위 제6조 제③항에 의하여 송부된 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교수자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되, 평가시 학생들의 평가의견을 참조하도록 한다.

②적성심사위원은 해당 채용 단위의 내부심사위원과 그 단위의 소속 대학장 및 교무혁신처장과 기획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7. 8., 2014. 12. 5., 2021. 04. 27.>

③해당학과(부)장은 적성심사 결과를 심사위원별로 밀봉하여 교무혁신처로 제출한다. <개정 2008. 11. 8., 2021. 04. 27.>

④적성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심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장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교무혁신처는 전공심사 및 적성심사 합산한 결과를 대학장을 경유(소속단과대학이 없는 경우 교무혁신처장) 학과(부)장에게 송부한다. <신설 2008. 11. 8.><개정 2021. 04. 27.>

⑥해당학과(부)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각 심사 대상자에 대한 소견서 및 신규채용대상자 평가표(별지양식 1)를 작성하고, 이들 중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여 해당 대학장을 경유 총장에게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 <신설 2008. 11. 8.><개정 2014.

12. 5.>

제8조(면접심사) ①총장은 해당 학과(부)에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채용인원수만큼의 신규채용예정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

②면접심사는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교목실장, 교무혁신처장, 기획처장, 학생복지처장, 해당 대학장 등)이 참석한다. <개정 2021. 04. 27.>

③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심사 결과서를 해당 대학장을 경유 해당 학과(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 심사위원) ①기초 및 전공심사에 필요한 외부 심사위원은 총장이 선임하여 심사를 위촉하되, 심사위원 수는 전체심사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5.>

②외부 심사위원 선정방법 : 채용전공분야 각 대학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공신력 있는 자로(한국연구재단 교수 등록 자료 등)에 근거하여 교무혁신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2. 5., 2019. 12. 27., 2021. 04. 27.>

제10조(내부 심사위원) ①내부 심사위원은 해당학과(부)의 소속 전임교수와 그 학과(부)가 속한 단과대학의 소속 교수 중 유사한 전공을 한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학과(부)장이 소속 대학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되, 심사위원 수는 3인으로 한다. <개정 2008. 7. 8., 2014. 12. 5.>

②소속 전임교원이 3인 미만이거나 소속 전임교원 중 유사한 전공을 한 교원의 수가 2인 미만인 학과(부) 및 학과(부)장이 없는 신설학과(부) 또는 비모집단위의 경우, 교무혁신처장이 소속 대학장 또는 유관 대학장과의 협의를 거쳐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 유사 분야 전공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되, 그 수는 전항과 같이 한다. <개정 2008. 7. 8., 2014. 12. 5., 2021. 04. 27.>

③삭제 <2008. 7. 8.>

제11조(평가기준) 신규채용대상자의 평가표<별표1, 2> 및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신규채용대상자 평가표

<별표 1: 교육 및 연구중심(연봉제교원)교원>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내용	비 고
세부전공 적합성(10%)		10	초빙분야와 학위별 전공 일치도 (학위논문)	전공심사 (내·외부심사위원)
연구실적 (50%)	실적물의 양	10	본교 연구업적평가에 근거 산출	교무혁신처
	실적물의 질	20	대표실적물 1 평가 (최저 10점~최고 20점)	전공심사 (내·외부심사위원)
		20	대표실적물 2 평가 (최저 10점~최고 20점)	전공심사 (내·외부심사위원)
교수자질 (40%)	교육관	10	교육과 연구에 대한 소신과 포부 면접 평가	적성심사 내부심사위원,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 평가자료 참조
	논리성 및 태도	10	면접 평가	
	강의 경력과 교수 능력	10	면접 평가	
	대학 교육이념 및 학과 교육목표와의 적합성	10	면접 평가	

<별표 2: 교육중점(강의중점계약제교원 등)교원> <개정 2021. 04. 27.>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내용	비 고
세부전공 적합성(10%)		10	초빙분야와 학위별 전공 일치도 (학위논문)	전공심사 (내·외부심사위원)
연구실적 (40%)	실적물의 양	10	본교 연구업적평가에 근거 산출	교무혁신처
	실적물의 질	15	대표실적물 1 평가 (최저 5점~최고 15점)	전공심사 (내·외부심사위원)
		15	대표실적물 2 평가 (최저 5점~최고 15점)	전공심사 (내·외부심사위원)
교수자질 (50%)	교육관	10	교육과 연구에 대한 소신과 포부 면접 평가	적성심사 내부심사위원, 단과대학장, (교무혁신처장) ※학생 평가자료 참조
	논리성 및 태도	15	면접 평가	
	강의 경력과 교수 능력	15	면접 평가	
	대학 교육이념 및 학과 교육목표와의 적합성	10	면접 평가	

②<별표1, 2>에 대한 평가 기준 : 연구실적물의 양적 점수(10점)는 동 규정 제4조를 대상으로 본교 연구업적 인정비율 ②항,④항,⑤항에 의거하되 최고득점자의 점수를 10 점으로 하고, 나머지 지원자의 점수는 이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단, 예체능 계열의 경우 문학작품전시, 발표, 창작, 공연작품집 등을 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학과(부)의 의 결을 거쳐 본교 연구업적평가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 11. 8.><개정 2016. 12. 13.>

제12조(비 모집단위 및 비전임 교원의 심사기준) 비 모집단위 및 비전임 교원의 교수채 용 시에는 제6조, 제7조, 제11조의 심사기준을 채용단위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개정 2019. 12. 27.>

제13조(신규채용 심사자료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 에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 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8.>

제14조(신규채용 관련서류 폐기) 신규채용에 관련된 서류는 채용일 기준으로 2년 경과 후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8.>

부 칙(2007.10.08.)

1. 이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3.01.)

1. 이 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①항 괄호부분 추가)

부 칙(2008.07.08.)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②항을 제③항으로 변

경, 제②항 신설, 제7조제②항 개정, 제10조제①항,제②항 개정, 제③항 삭제)

부 칙(2008.10.08.)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신설, 기존 제12조, 제13조 조항변경)

부 칙(2008.11.08.)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②항,제③항 개정, 제7조제③항 개정, 제⑤항, 제⑥항 신설, 제11조제①항 <별표 1>개정, 제②항 전면 개정)

부 칙(2009.05.26.)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호 공고기간 개정)

부 칙(2014.01.09.)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②항, 제11조①~②항을 개정하고 [별지양식2] 신설)

부 칙(2014.12.05.)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전항 삭제, 제6조, 제6조②항, 제7조②,⑥항, 제9조①,②항, 제10조①,②항 개정)

부 칙(2016.12.13.)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①항개정, ②항,③항,④항,⑤항 신설, 제11조②항 개정)

부 칙(2017.06.13.)

1.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호 개정, 제3조4~8호 개정, 제3조9~10호 신설)

부 칙(2018.01.02.)

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호 개정)

부 칙(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②항, 제12조 개정)

부 칙(2020.03.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③항 개정)

부 칙(2020.07.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호 개정)

부 칙(2020.12.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②항,④항 개정)

부 칙(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4조 ①, ⑤항2호2), 제6조 ②,③항, 제7조 ②,③,⑤항, 제8조 ②항, 제9조 ②항, 제10조②항, 제11조 ①항 중 직제개편으로 부서(장)명칭과 교원명칭(강의중점교원) 개정)

<별지양식 1: 교육 및 연구 중심 교원용>

임용대상학과						임용대상전공			
성명			나이		최종 학위		학 부 출신학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경력 및 실적증명			평가점수
세부전공 적 합 성		세부전공 일치도			10				
		소계			10				
연구실적		연구실적물의 양			10				
		대표실적물의 질 1			20				
		대표실적물의 질 2			20				
		소 계			50				
교수자질		교육관			10				
		논리성 및 태도			10				
		강의 경력과 교수 능력			10				
		대학 교육이념 및 학과 교육목표와의 적합성			10				
		소 계			40				
합 계 점 수					100				
1차평정자 (학과(부)장)		성 명 : ①				단과대학 평가위원장	성 명 : ②		
1차평정자 종합의견									

<별지양식 2: 교육중심 교원용>

임용대상학과					임용대상전공			
성명		나이		최종 학위		학 부 출 신 학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경력 및 실적증명			평가점수
세부전공 적 합 성	세부전공 일치도			10				
	소 계			10				
연구실적	연구실적물의 양			10				
	대표실적물의 질 1			15				
	대표실적물의 질 2			15				
	소 계			40				
교수자질	교육관			10				
	논리성 및 태도			15				
	강의 경력과 교수 능력			15				
	대학 교육이념 및 학과 교육목표와의 적합성			10				
	소 계			50				
합 계 점 수				100				
1차평정자 (학과(부)장)	성 명 : ㉠				단과대학 평가위원장	성 명 : ㉠		
1차평정자 종합의견								